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82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개 요	5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5
2. 제정안의 취지 및 제정 필요성	9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2
1. 총칙(제1장,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2
2.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제2장,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16
가.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6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21
3.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제3장, 안 제13조부터 제37조까지)	24
가.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제1절, 안 제13조 및 제19조)	24
(1) 공항경제권 조성 및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24
(2) 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 등(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29

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제2절, 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34
(1)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34
(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43
다.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제3절,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54
(1)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54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57
(3) 관광지의 개발 및 조성 등(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60
 4.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제4장, 안 제38조부터 제50조까지) ..	64
가.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제1절, 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64
(1)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64
(2) 국제학교의 설립 등(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67
나.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제2절, 안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74
 5.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	
(제5장, 안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81
(1) 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안 제51조)	81
(2)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안 제52조, 제53조 및 제56조)	88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안 제54조 및 제55조) ..	95
(4)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안 제57조)	98
(5) 조세감면 및 부담금 감면 특례(안 제58조 및 제59조)	101
 6.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을 위한 재정보조	
(제6장, 안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105

7. 보칙 및 벌칙(제7장, 안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107
8. 부 칙	10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7.
3. 회부연월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하늘과 땅, 바다가 연결되어있는 인천광역시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 및 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 문화산업을 집적화하고,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를 항공 여객·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 각각의 책무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2장).
- 1) 인천광역시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둠(안 제7조 및 제8조).
 - 2)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성 및 경쟁력강화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
 - 3)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인천광역시장에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함(안 제3장, 제13조, 제15조, 제20조 및 제26조).

1)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국제물류특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보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관할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4)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마.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4장, 제38조, 제44조).

1) 글로벌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2)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관리의 특례,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 여행객에 대한 관세 면제 등 글로벌 생활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5장).

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6장).

Ⅲ. 개 요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김교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구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본칙 7장·5절 총 69개 규정 및 부칙 1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장	절	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인천광역시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
		제9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조치)
		제10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실태조사)
제3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기반조성	제1절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제13조(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제14조(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제15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제16조(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제17조(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
		제18조(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19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2절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제20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제21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제22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2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4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제25조(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제2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제2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8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장	절	조
	제3절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구성	제29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제30조(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제31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3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제34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제35조(관광지의 개발 및 조성) 제36조(관광지 등의 처분 특례) 제3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제1절 글로벌 교육환경 구성	제38조(글로벌 교육환경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제39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0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4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등) 제42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43조(국제학교의 설립 등)
	제2절 글로벌 생활환경 구성	제44조(외국인의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시책) 제45조(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의 특례) 제46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47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4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9조(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50조(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지원)
제5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구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		제51조(특구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 제52조(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3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의 특례) 제54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5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6조(지역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제5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58조(법인세 등 조세의 감면) 제59조(부담금 등의 면제)
제6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구성 등을 위한 재정확보		제60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61조(잉여금의 처리) 제62조(예비비) 제63조(세출예산의 이월)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64조(청문) 제65조(보고·검사등)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7조(벌칙)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
부 칙		시행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천광역시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항공, 물류, 에너지, 생명, 의료, 관광, 교육,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육성하며(안 제1조), ②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두며(안 제7조),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위한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에 관한 분야별 시책을 규정하고, ③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항공·철도·도로를 결합한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고(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④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인천투자진흥지구 지정,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⑤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

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 사항을 포함한 “**교육환경**”,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특례, 외국인서비스 확대 등 글로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제38조부터 제50조까지),

⑦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개발사업의 **특례** 및 이 법률상 지정된 각종 특구 등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과 기업 등에 근무·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⑧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2. 제정안 취지 및 제정 필요성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바다를 접하고, 서울과 근접하여 1883년 제물포항 개항과 함께 조선의 관문 기능을 담당해왔으며, 현재에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2017년 ‘2050 인천 비전’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 계획에서도 인천의 미래 모습을 ‘세계의 사람과 자원이 찾아오는 도시, 인천’으로 설정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거점이 되는 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음.

특히,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¹⁾ 인천국제공항은 개항('01.2.29.) 이후 2019년까지 국제여객 및 화물 수송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여객 및 화물 수송량은 각각 세계 5위, 3위로 상위권에 해당되는 국제적인 수준을 공항으로, 인천항

1)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및 시사점”(2020.05), 국회입법조사처

<2019년 기준 세계 공항의 국제여객 및 화물 수송량>

순위	공항명	여객수(만 명)	공항명	화물량(천 톤)
1	두바이	8,635	홍콩	4,697
2	런던(히드로)	7,604	상하이(푸둥)	2,825
3	암스테르담(스키폴)	7,168	인천	2,664
4	홍콩	7,131	두바이	2,515
5	인천	7,058	도하	2,173
6	파리(샤를 드골)	6,985	타이페이	2,165
7	싱가포르	6,760	도쿄(나리타)	2,040
8	프랑크푸르트	6,307	싱가포르	2,014
9	방콕(수완나품)	5,293	프랑크푸르트	1,961
10	타이페이	4,836	앵커리지	1,943

과 더불어 전세계를 연결하고 인천광역시가 물류, 사람, 자본이 모이는 세계 경제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기반이 되고 있음.

또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천광역시의 강점 요소로, 강력한 물류기능의 기반이 되는 국제공항·항만, 경제자유구역 및 대규모 산업단지, 광역교통체계의 발달, 경인운하 건설 및 주변권 개발로 물류·경제 파급효과 등을 꼽고 있으며,

제정안은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를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이로 인해 특정지역을 위한 특례와 지원을 규정한 특별법 촉진 가능성, 국가 의존도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에 역행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이라 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겨있으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의 경우, 그 동안 국토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으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제정안의 개별 규정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색 및 필요성의 반영 여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집행권한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양하는 것의 적정성, 개별법과의 정합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도입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지역 특화 발전 및 지역 경쟁력 확보라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각종 특례와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수도권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비수도권과의 경쟁력 격차 심화, 국가 균형발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 총칙(제1장,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1장 총칙은 인천광역시를 항공, 물류, 에너지, 생명, 의료, 관광, 교육,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인천광역시가 조성하려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안 제2조),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4조 및 제5조), 인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항공, 물류, 에너지, 생명, 의료, 관광, 교육,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글로벌경제거점도시”란 인천광역시가 축적해온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의 기반 위에 국내외 다양한 첨단기업 등이 보유한 양질의 자본이 투자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혁신적·융합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세계경제의 거점이 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이 법에 따른 특구·지구·단지 등(이하 “특구 등”이라 한다)이 조성된 경우에는 특구 등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건설·유지 및 보수, 산업체 이전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차원의 기반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인천광역시가 충분한 자율성과 책임하에서 글로벌경제거점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인천광역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자체적인 지역혁신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인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및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이 규정한 규제혁신 및 특례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2조, 정의) 인천광역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안 제25조)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안 제41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투자기관”이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특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여 특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

(안 제4조, 국가의 책무)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인천광역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가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기반조성 및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참고] 유사 입법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기반조성사업 추진, 행정·재정상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인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및 특례 등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구성에 있어 관련 규제 법률보다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여 규제 특례에 관한 법 해석 및 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2.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제2장,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가.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정안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7조), 국무총리 산하 실무추진단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에도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 정 안
제2장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제23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31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정 안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민간위원: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추진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설치) ①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1. 제7조제6항에 따른 실무추진단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 첨단산업 분야 육성 및 관련 기업 등 지원 및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천광역시 실무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조치)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구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 및 추진기구를 두는 것은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첫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³⁾으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에 따른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으로,⁴⁾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23.5.16.개정, 2023.11.17.시행)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등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기구(추진단 등)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⁵⁾.

예외적으로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만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어,⁶⁾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안 제7조⑥)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추가로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안 제8조), 위원회의 사무기구를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전북특별법」, 「강원특별법」, 「제주특별법」 등에서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별도의 실무지원단을 추가하고 있지 않음.⁷⁾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등(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특정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위원회는 인천의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이나, 관련 기
능은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별도의 위원회
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10조 및 제12조)

제 정 안

제10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항공, 물류 및 디지털·첨단산업 등 인천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글로벌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수립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정 안

- ③ 인천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의 각 항목에 대해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인천광역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와 요건 및 결과의 활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은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고, 공청회·의견수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공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해당 규정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일련의 규정이 없는데(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인허가의제, 토지수용 등), 종합계획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물류·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교육, 관광 등 인천광역시 개발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자의 범위(공공, 민간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조합, 법인 규정 필요), 시행승인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인천광역시장의 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⁸⁾

한편, 해양수산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항만 관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 주관 ‘항만기본계획’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은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어,⁹⁾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 또한 각종 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계획과의 관계 조항 신설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제145조(기초조사),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8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51조(제한적토지수용) 등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음.

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839호, 2024. 12. 27.시행) 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전북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기반조성(제3장, 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가. 공항·항만 경쟁력 확보(제1절,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절(공항·항만 경쟁력 확보)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은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안 제13조), 구성에 필요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중 공항·항만·철도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광역시장도 국제물류특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4조),

국제물류특구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 일반·도시첨단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안 제15조),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안 제16조), 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공항경제권 조성 및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 정 안
제13조(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항공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이하 “공항경제권”이라 한다)가 조성될

제 정 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국가, 인천광역시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항공·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가 세계적 물류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항 및 입출항 항만의 최적화, 환적 등의 신속성 확보 등 국내·외 물류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발전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 제조·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물류 산업의 육성, 물류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중 공항·항만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이하 “국제물류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물류특구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국제물류특구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국제물류특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목적상 인접한 시·도의 관할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도의 관할지역을 포

제 정 안
함하여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해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제물류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요건, 국제물류특구 지정·변경·해제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인 “공항경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항의 역할이 여객, 물류 등 기본적 기능 외에 산업·경제·사회·문화 등의 기능이 강조되는 등 공항 역할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¹⁰⁾함에 따라 공항경제권을 조성하여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 외에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공항경제권이 「공항시설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항구역 및 공항개발예정지역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항경제권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는 것은 각 개별법에 따라 계획되는 철도, 도로 등 시설 구축 계획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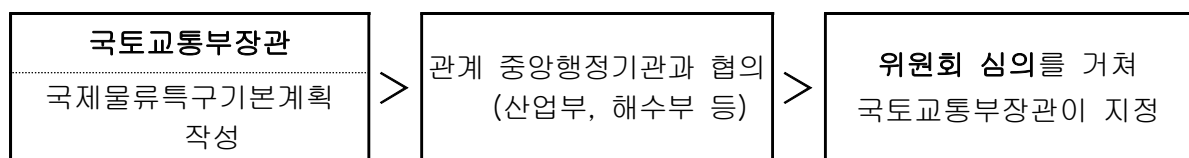
10) 공항을 통한 지역상생발전(2020), 국토연구원

(안 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광역시 관할 지역 중 공항·항만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항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를 국제물류특구로 지정하여 전략적 육성을 통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특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장도 국제물류특구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물류특구 지정 절차 >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특구 내 항만이 주요 시설이므로, 국제물류특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공동 추진이 필요하며, 특구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시와 인접한 시·도의 일부분도 특구로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인천을 개발하는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 작성 시 포함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 마련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임.

(2) 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 등(안 제17조부터 제 19조까지)

제 정 안
제17조(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 제16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변경 또는 수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제18조(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국제물류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이하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②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한다. ③ 국제물류특구 내에서 국제물류특구입주기업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 정 안

제19조(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정부는 국제물류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 공항·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국제물류특구 내에서의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국제물류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인천광역시장은 국제물류특구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안 제17조) 제정안은 국제물류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경제자유구역, 일반·첨단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에 따른 규제 특례,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국제물류특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물류특구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은 지정 목적, 입주요건 등이 상이하여 지정 의제시 혼선과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18조) 제정안은 국제물류특구 지정 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이 의제되는 것을 전제로, 국제물류특구지역 입주기업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의 특례’를 적용됨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¹¹⁾

다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의 이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목적, 지정요건·절차, 운영주체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9조) 정부는 국제물류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천 광역시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제물류특구 내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①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출 또는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한다.

② 입주기업체가 제29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한다.

③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기업체 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대한 사용료 감면, 관세절차 및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국제물류 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인천항의 일부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을 가진 항만시설운영자가 정부가 아닌 인천항만공사이므로, 사용료 감면의 주체에 정부 외에 시설운영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공항, 항만 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 항만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 협의,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 지원 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13조,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등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 현행 「공항시설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항구역 및 공항개발예정지역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입법 실익이 낮음.
제14조, 공항경제권 조성 지원 등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 공항경제권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하는 것은 각 개별법에 따라 계획되는 철도, 도로 등 시설 구축계획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공항시설법」으로도 주변지역 개발이 가능하며, 현재 인천공항은 리조트·카지노 등의 다양한 복합개발을 추진 중임.
제16조,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해양 수산부	수정 의견	○ 국제물류특구 내 항만이 주요시설로 <u>특구 지정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도 포함 필요</u> ○ 특구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고려해 필요시 인천시와 인접한 시·도 일부도 특구로 함께 지정하도록 규정 필요
	국토 교통부	수정 의견	○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u>인천시가 계획을 작성</u> 하고, 지정하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수정 필요 ○ 또한, 국제물류특구기본계획 작성 시 포함할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

구분	부처 의견		
	경상남도	수정 의견	○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목적상 <u>인접한 시·도의 관할 지역</u>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u>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인천시장이</u> <u>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u> 하고 있으나, 국제물류특구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등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u>특구 지정 요청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필요</u>
제17조, 국제물류특구 지정의 효과	산업통상 자원부, 관세청	신중 검토	○ (<u>지정 효과에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제외</u>)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은 국제물류특구와 지정 목적, 운영 주체, 입주여건 등이 <u>상이하</u>여 제도 운영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u>관련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등 지정 절차 필요</u> - 국제물류특구를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지정 요청 시, 산업통상자원부는 <u>지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수정 필요</u>
	국토 교통부	수정 의견	○ (<u>의제대상 확대</u>) 국제물류특구 지정 시 신속한 개발 진행을 위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의제 대상 확대
제18조,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관세청	신중 검토	○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지정목적, 지정요건·절차, 운영주체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u>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함</u>.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수정 필요
제19조, 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획 재정부	수정 의견	○ 관세절차와 신속한 환적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의무 조항(제3항) 관련하여, 국제물류특구 지정 여부(임의규정)와 필요한 통관절차가 아직 불확실하므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해양 수산부	수정 의견	○ <u>항만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 협의,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u> 하므로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 필요 ○ 인천항의 일부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을 가진 항만 시설운영자가 정부가 아닌 <u>인천항만공사</u>이므로 <u>시설 운영자를 사용료 감면 주체에 추가 필요</u>
	경남도청	수정 의견	○ 국제물류특구가 다른 시·도의 관할지역을 포함하여 지정된 경우에 정부가 다른 시·도의 공항·항만과 그 배후지에 대한 인프라 신속 구축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필요

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제2절, 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정부는 항공 MRO 등 공항경제권 신산업, 친환경 재생에너지, 첨단해양산업,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신산업,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육성시책**을 마련하고(안 제20조),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천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안 제21조),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안 제23조), 인천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24조), 인천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안 제25조) 등의 사항을 규정함.

(1)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 정 안
제20조(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① 정부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첨단산업 등”이라 한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육성시책을 마련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항공 여객, 항공 물류, 항공 MRO, 항공 제조, 관광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2.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3. 해운·항만 등 첨단해양산업 4. 수소차, 전기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5. 로봇, AI 등 디지털신산업 6. 바이오, 의료, 의약 등 헬스케어산업

제 정 안

7. 국제기구, 외국인투자기업, 국제학교, 국제여객터미널 등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산업

② 정부는 첨단산업등의 생태계 조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적 동향·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2.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 연구소의 설치 또는 지정
3. 첨단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유치 및 이전에 필요한 지원
4. 첨단산업 등의 분야별 지원센터 등의 설립 또는 지정
5.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조치

③ 정부는 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산업계 대응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등에 대한 국제박람회 등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를 포함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육성 및 지원시책의 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인천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

제 정 안

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인천광역시장은 제 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등과 관계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안 제20조) 제정안은 정부가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육성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첨단산업 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의 기반 마련은 관련 기업, 인력, 입지 등 지역의 산업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 서 육성 정책을 주도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첨단산업 관련 대규모 사업은 특정 지역을 사전에 정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 계획, 소재·부품·장비 등 관련기업 집적 여부, 전문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인천광역시를 우선적으로 고

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21조)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신 인천광역시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천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¹²⁾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¹³⁾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제3항),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제4항),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항).

이는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권한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과학기술단지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우선, 인천광역시장의 과학기술단지 지정 요청과 관련하여, 국가 전체 측면에서 산업 육성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강원특별법」 입법례¹⁴⁾와 같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¹⁵⁾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¹⁵⁾

제정안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대신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¹⁶⁾

1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게획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 관리 등 각종 전문적인 심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제5항)과 관련하여,

산업단지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수급계획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조성 중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절차는 산업입지 조성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를 필요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22조) 인천광역시장은 과학기술단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등과 관계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16) 제정안 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를 지정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게획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단지로 지정하되,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정 요건과 절차¹⁷⁾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지정 요건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④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유사 입법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4. 6. 8. 시행)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20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시책	기획재정부, 산업통상 자원부	수정 의견	○ (임의 지원규정으로 변경 필요) 각종 혜택에 대한 <u>강행규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문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강행 지원규정을 임의 지원규정으로 변경 필요</u> ○ 첨단산업의 기반을 인천 지역에 구축하려면, 관련 기업, 인력, 입지 여건 등 지역의 산업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인천시에서 ‘첨단산업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됨. ○ 첨단산업 관련 대규모 사업은 특정 지역을 사전에 정하기 보다는, 기업의 투자 계획,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집적 여부, 전문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제21조,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구성	국토 교통부	수정 의견	○ (지정 요청 조항 정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산업입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u>국가 전체 측면에서의 산업육성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과학기술단지(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필요</u> ○ <u>산업단지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수급계획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조성 중으로, 산업단지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절차는 산업입지 조성에 관한 일반법인 「산업입지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을 따르도록 할 필요</u>
제22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 자원부	신중 검토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여러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거쳐 지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지정 요건과 절차를 거칠 필요

(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등(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 정 안
제2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첨단산업 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내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천광역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관리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제 정 안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공동 매장의 설치·운영 지원

③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기업·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 내의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② 외국투자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투자기관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국가는 인천광역시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의 국가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장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 내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등에 융자, 임대료 감면 등 자금 지원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안 제24조), 투자진흥지구 내의 외국투자기관에 대해 내국 기업이 적용받는 고용상

제약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안 제25조),

인천광역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국가 지원 확대,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내국 기업과의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25조제1항, 법률상 고용의무에 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체는 업체별로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¹⁸⁾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내 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¹⁹⁾

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²⁰⁾

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북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연구, 관광·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²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 투자진흥지구 내 외국투자기관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헌법 및 보훈관계법령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의무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진흥지구 내의 외국투자기관이 고령자나 장애인 근무가 불가능한 직무나 상황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합리적 사유가 없이 법적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21)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안 제25조제2항, 유급휴일 특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²²⁾는 근로자가 임금의 감소 없이 “휴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외국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²³⁾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근로자·사용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²⁴⁾ 제정안은 일반 근로자들이 보장받는 유급휴일을 외국인투자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무급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외국인투자기관의 인재 이탈 등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24)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안 제25조제3항, 파견근로자 특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및 제6조(파견기간)²⁵⁾에서는 근로자파견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간접고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외국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²⁶⁾

고용노동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목적 자체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는데 있고, 새만금사업 역시 대규모 간척 사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특정 지역의 육성·진흥 등을 위한 제정안과 차이가 있으며, 대상업무 및 기간 확대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이해관

2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자 이견이 큰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없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26조) 제정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²⁷⁾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국비분담비율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외의 경우 현금지원의 국비 분담 비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담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권 내에서 인천광역시의 경우만 우대할 근거가 명확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재정분담비율 >

투자 분야	국비:지방비 분담률	개정일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 수도권 50:50 비수도권 80:20	‘22.7 ‘23.4
신성장동력·첨단기술, 소부장, R&D센터	▪ 수도권 40:60 비수도권 70:30	
대규모고용·지역본부 등	▪ 수도권 30:70 비수도권 60:40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 분	부 처 의 건		
제24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획 재정부, 산업통상 자원부	수정 의견	○ (임의 지원규정으로 변경 필요) 각종 혜택에 대한 강행규정은 정부의 <u>예산편성권을 제약</u> 하고, <u>타지역과 의 형평성</u> 등 문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강행 지원규정을 임의 지원규정으로 변경 필요
제25조제1항, 투자진흥지구 내 외국인투자기 관에 대한 특례	국가 보훈부	신중 검토	○ (국가유공자 고용 특례 관련)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및 보훈관계 법령 제정 취지, 다른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고용 노동부	신중 검토	○ (고령자·장애인 고용 특례 관련) 고령자나 장애인 근무가 불가능한 직무나 상황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예외를 두는 것은 「고령자고용법」 및 「장애인고용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다른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휴일 고용 특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근로자· 사용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제정안은 일반 근 로자들이 보장받는 유급휴일을 외국인투자기관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무급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외국인투자기관의 인재 이탈 등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 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근로자파견 고용 특례 관련)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및 기간 확대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이해관계자 이견이 큰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제2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특례	산업통상 자원부	신중 검토	○ <u>수도권의 경우 현금지원의 국비 분담비율을 최대 50%까지 既상향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u> - 외국인투자투기업 유치에 따른 지자체 세수·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시 <u>현행 지방비 매칭비율은 지 자체의 책임있는 외투유치 정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u> ○ 아울러, <u>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 도권과 비수도권이 분담비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u> 수도권 내에서 인천광역시의 경우만 우대할 근거가 명 확치 않은 상황에서 동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안 제27조 및 제28조)

제 정 안
제2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 2.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기준 제28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인천광역시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²⁸⁾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면적기준 및 요건 등을 시조례로 정할

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7조),²⁹⁾ 인천광역시장은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8조).

각각 「제주특별법」 및 「전북특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1호, 제17조의4제1항·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4. 12. 27. 시행)

제65조(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지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제3절, 안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제3절(국제회의 및 문화·관광 거점 조성)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천광역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고(안 제29조), 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30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인천광역시장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1조),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32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34조) 등을 규정함.

(1)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제 정 안
제29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설치 취지를 살려 인천광역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제 정 안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30조(국제회의 등 방문 비자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의 장에 위임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안 제29조)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³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광역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로, 「제주특별법」 및 「전북특별법」³¹⁾에도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음.

3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4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에 맞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사업

(안 제30조)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자유로운 입출국을 보장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내륙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인천광역시의 특성상 버스, 승용차, 도보 등을 통한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외국인의 발생 가능성에 따른 출입국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광목적 무사증 입국 특례³²⁾가 인정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와 달리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해서만 입·출도가 가능한 차이가 있음.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 정 안
제31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 ① 인천광역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시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및 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33조(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추천) ① 인천광역시장은 창작성,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내의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추천

제 정 안
받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의 방법·절차 등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장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천광역시 내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와 제작자 등을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사업자에 추천할 수 있고, 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³³⁾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승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³⁴⁾에 따른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정부의 권한 등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 개발하고, 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4)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시행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부담금이 면제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의제되는 점³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하므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승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관광지의 개발 및 조성 등(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 정 안
제34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국제회의장·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관광 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 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관광지의 개발 및 조성)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세계 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숙박·관광·여가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등 휴양지를 개발·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조성에 필요한 투자 유치 및 지원방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복합리조트 등의 개발·조성에 관한 방법·절차 및 지원 등 관광지 조성·개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관광지 등의 처분 특례)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원형지로 공급(매각, 임대, 위탁·경영)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관광진흥법」의 “조성계획”으로 본다.
제37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경제거점도시에 적합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안 제36조)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구청장이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형지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로, 원형지 공급방식은 부지조성공사를 부지를 이용할 민간 수요자에게 맡기는 방식임. 이 경우 원형지의 가격에 부지 조성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토지공급가격이 저렴한 편임.

그러나, 원형지 공급방식은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토지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원형지에 대한 난개발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특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공자금 투입을 통해 부지를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원형지 공급방식 도입 시 각종 특혜 시비, 원형지 수급자의 공익기여도와 개발이익 간 차이, 개발된 토지 수급자와의 형평성, 관광지 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37조) 제정안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적합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고자 국가도시공원 등의 지정·조성을 위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적 기념사업 및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³⁶⁾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위한 구체적 요건이 완화될 경우 인천광역시의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도시공원 지정 특례를 규정한 유사 입법례는 없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을 전제로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따른 지정실익 요건을 따져야 할 사항으로 지역별 요건을 따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1. 도시공원 부지 : 가.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34조, 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 관광부	수정 의견	○ (임의 지원규정으로 변경 필요) 각종 지원에 대한 강행규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강행 지원규정을 임의 지원규정으로 변경 필요
제35조, 관광지의 개발 및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기획재정부	수정 의견	○ (조문 정비)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시·도 지사가 지정하는 법정 관광지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관광지’를 ‘관광자원’으로 수정하고, ‘휴양지’ 및 ‘복합 리조트’의 정의가 모호하여 혼란이 우려되므로 삭제 필요 ○ 강행 지원규정을 임의 지원규정으로 변경 필요
제36조, 관광지 등의 처분 특례	문화체육 관광부	신중 검토	○ 관광지에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게 할 경우 개발된 토지보다 낮은 공급가격의 원형지 제공에 따른 특혜 시비, 원형지 수급자의 공익기여도와 개발이익 간 차이, 개발된 토지 수급자와의 형평성, 관광지 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제3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충족 필요) 국가도시공원은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을 전제로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따른 지정 실익 요건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별 요건을 따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4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제4장, 안 제38조부터 제50조까지)

가.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제1절, 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1절(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은 인천광역시가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해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과용도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9조), 유치원 방과후 수업과정을 시 교육감이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0조),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특색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안 제41조),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42조), 국제학교의 설립(안 제43조) 등을 규정함.

(1)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 정 안
제38조(글로벌 교육환경 및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특색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학교가 외국의 학교와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관련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

제 정 안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인천광역시 소재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시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안 제39조는 교육과정, 수업일수, 교과용 도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기숙형 중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 특화교육 추진이 가능하고,

안 제40조는 인천광역시의 유치원 방과후 수업 과정을 교육부장관 대신 시 교육감이 지역 상황에 맞게 설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제주도법」,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³⁷⁾

제정안은 지역 교육여건 악화와 인재의 역외유출 악순환 지속에 따라 지역 교육역량 강화와 동시에 인재 유입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고, 기업 이전 등의 핵심 고려조건인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으로 글로벌 기업 등의 이전 및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관련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31조제4항)에 대해 동의하나, 대통령령 제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부 기준·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4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26조제3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국제학교의 설립 등(안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 정 안
제4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교육발전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시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인천광역시장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민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초·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제42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학위수여, 교과목이수인정, 산업체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

제 정 안

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인천광역시장은 물류·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⑤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제학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조례로 정하는 법인

②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시교육감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제학교의 운영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학교운영규정, 입학기준, 학력인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 및 시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 및 시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국제학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제41조 및 제43조)

제정안은 「제주특별법」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에 교육 관계 법률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국제학교란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학교로,³⁸⁾ 내국인 및 외국인 학생정원 쿼터없이 제주자치도 영어교육도시에 국가·제주·국내외 법인(영리법인 포함)이 설립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자치도 내에 설립되며,³⁹⁾ 내국인 쿼터를 30%로 두고 있음.

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국제학교 등 유사 교육기관 비교＞

구분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
근거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 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설립 자격	• 비영리 외국 학교법인	• 외국인 • 비영리 외국법인 • 국내 학교법인	• 국가 • 제주특별자치도 • 국내외 법인
설립 목적	•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	• 국내거주 외국인 자녀교육 • 해외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의 교육	•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 •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설립 가능 지역	• 경제자유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고등) •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 기업도시(고등) • 새만금지역 • 평택시	• 전국 설립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내국인 입학 비율	• 초·중등 : 총 정원의 30%(50%까지 확대 가능) • 고등 : 제한 없음	• 학생 정원의 30% (50% 까지 확대 가능)	• 제한없음
설립 운영 현황	• 유·초·중등: 2개교 • 고등: 5개교	• 외국인유치원(1개교) • 외국인학교(38개교)	• 4개교 (한국국제학교, NLCS Jeju, Branksome Hall Asia, SJA Jeju)

※자료: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를 바탕으로 작성

(<https://www.isi.go.kr/EgovPageLink.do?link=isi/kr/serviceIntro/service04&menuId=A004>)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당초 설립목적의 변질, 학교서열화 및 교육양극화 심화 등의 이유로 교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축소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과 학생의 선택권 및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등의 이유로 교육의 자율성·수월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은 현재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 중구, 서구에 설립이 가능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에만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어 인천광역시도 강화군과 옹진군만 해당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⁰⁾

참고로,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의 경우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지역 확대는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목적은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을 제한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배제되고, 내국인학생이 비율·자격 제한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이 설립가능한 예외적 학교로, 초·

40)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최근에 교육발전특구로 시범지정(2024.2.28.)되었음.

중등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42조)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첨단산업분야 대학원대학 및 산업·전문대학 설립, 외국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대학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확보 및 산업 육성의 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별도 학교 설립은 재정 소요가 크므로, 기존 대학(인천광역시 소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분야 ‘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및 전문대학원과정’을 개설하거나 석·박사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등 기존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4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등	교육부	수정 의견	○ (지역을 제한하여 허용 필요) 현재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 중구, 서구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가능하고, <u>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외국교육기관 유치 목적은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여도 그 목적 달성 가능</u> ○ (조문 정비)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5항), <u>외국교육기관 제도와 외국인학교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로 외국교육기관 조항에 외국인학교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별도조항으로 신설 필요</u>
제42조,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교육부	수용	○ (기존 대학 활용 검토) 제정안에 동의하며, <u>별도 학교 설립은 재정 소요가 크므로</u>, 기존 대학(인천광역시 소재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분야 ‘학사과정, 전문 학사과정 및 전문대학원과정’을 개설하거나, 석·박사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등 <u>기존 대학을 활용·‘지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u> ○ 설립 또는 지정 절차 진행시,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의 의견 수렴 절차 필요 -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자원 감소, 유사·중복학과가 있는 대학의 의견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제43조, 국제학교의 설립 등	교육부	신중 검토	○ 제정안의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내국인 학생이 비율·자격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이 설립 가능한 예외적 학교로, <u>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u> ○ 아울러, 인천광역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u>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u> ※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천 연수구·중구·서구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 ※ 설립 지역의 제한이 없고, 해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를 활용할 수 있음

나.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제2절, 안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2절(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은 이전 외국기업 및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구 등의 각종 기관, 학교, 기업 등 체류 외국인 및 동반자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 외국인자녀 어린이집 설치·운영(안 제46조),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영어표기 및 외국인 민원 상담 등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안 제48조), 여행객 면세 또는 환급(안 제4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의 특례(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 정 안
제44조(외국인의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인천광역시시는 외국기업·외국투자기관의 유치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을 글로벌경제거점도시의 위상에 부합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에 외국의 우수한 전문인력과 외국기업 및 외국기관의 유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의 각종 기관·학교·기업 등에서 근무하거나 파견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등으로 이전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 등으로 이전하는 외국인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특구 등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제47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인천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제4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인천광역시장은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 및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 제공
2.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 접수·처리
3.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 및 대중교통 내 외국어 안내 서비스
4.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
5. 외국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종합상담센터 설치
6.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법」 과 비교 >

제정안	「제주특별법」	비고
(§44) 외국인의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시책		
(§45)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의 특례	(§197)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
(§46)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209)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유사
(§47) 외국방송의 재송신	(§206) 외국방송의 재송신	동일
(§48)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205) 외국인 서비스 제공	동일

(안 제45조)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⁴¹⁾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구 등의 각종 기관·학교·기업 등에서 근무하거나 파견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반하여 입국하는 자에 대한 특례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41)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관리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입국 특례조항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특례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유사 입법례에 맞춰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입법례에서 「출입국관리법」 특례 조항을 둔 경우에도 해당 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자 외 ‘동반입국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반입국자에 대한 특례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 유사 입법례

법률	내 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1. 4. 4. 개정)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 1. 29. 개정)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23. 4. 25. 제정)	제3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 8. 4. 제정)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2024. 1. 16. 제정)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 12. 26.)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 2. 복합단지 / 3. 문화산업진흥지구 /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	---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44조, 외국인의 생활환경 증진을 위한 시책	기획 재정부	수정 의견	○ (임의 지원규정으로 변경 필요) 각종 지원에 대한 강행규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문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강행 지원규정을 임의 지원규정으로 변경 필요
제45조, 외국인의 사증발 급 절차 및 체류 기간의 특례	법무부	수정 의견	○ (특례 범위 제한 필요) 제정안 특례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유사입법례와 유사하게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특구 등의 각종 기관·학교·기업 등에서 근무하거나 파견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특구의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 유사입법례: 전북특별법 등 ○ (조문 정비) 특례와 관련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인용 조항에 체류자격의 요건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제10조의2(일반자격) 및 제10조의3(영주자격)을 추가하여 수정 필요 ※ 유사입법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
		신중 검토	○ (제3항, 동반입국자에 대한 특례) 다른 법에서 「출입국관리법」 특례조항을 둔 경우에도 해당 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자 외 ‘동반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반입국자에 대한 특례 마련은 신중한 검토 필요

(2)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안 제49조 및 제50조)

제 정 안
제49조(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인천광역시(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인접한 다른 시·도의 관할지역도 포함한다) 여행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천광역시 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50조(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인천광역시는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내 외국인의 의료 이용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관리를 위한 통계·정보의 수집 3.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의료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5.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안 제49조) 인천광역시 여행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세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개별법상 조세 감면 근거가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 근거가 직접 규정⁴²⁾되어야 하므로 개

4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별법상 재량규정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조세 감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사유로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 등의 경우에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인천지역 내에 지정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섬지역⁴³⁾과는 달리, 출입 관리상의 문제로 면세물품의 부정유출 등으로 유통교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인근 상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및 타 지역의 유사 요구 쇄도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3) 우리나라(제주도)뿐 아니라 해외 내국인면세점(중국 하이난, 일본 오키나와, 대만 진먼)은 모두 섬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운영중임.

5.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사업 등의 실시 및 특례

(제5장, 안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1) 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안 제51조)

제 정 안
제51조(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구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특구 등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제22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확정 및 공고된 것으로 본다. ③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 등 행위의 제한·금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제2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⑤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 등의 조성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인천광역시장이 제5항에 따른 특구 등을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인천광역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특구 등의 조성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제 정 안

별조치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복구 또는 복구계획의 제시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환경평가등급의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계사업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한다.

⑩ 인천광역시장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건축물 용도대로 허가할 수 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을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정안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및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예외 인정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타당한 취지로 보이나,

해당 특례의 정책적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구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개발제

획 확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제2항),

「국토계획법」 제4조⁴⁴⁾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고,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상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장기발전방향 등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며, 도시·군기본계획은 시·군 등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개발계획 확정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을 의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①「국토계획법」 제38조⁴⁵⁾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하고(제4항), ②인천광역시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특구 등의 조성지역’으로 지정하고, 특구 지구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제5항 및 제6항), ③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복구 또는 복구계획⁴⁶⁾의 제시 대신 보전부담금의 납부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제7항), ④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경우 환경평가등급의 적용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제8항) 규정하고 있음.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②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개발계획의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개발사업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가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①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성장관리 측면 외에 자연보전, 국가안보 등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리되는 전형적인 국가사무로, 특정 권역에 한정하여 지자체에 지정·변경 권한 이양은 부적합하고, ②특구 지구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유사입법 채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붕괴 우려가 있으며, ③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가 있음에도 복구 대신 부담금 대납을 허용할 경우 훼손지 복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④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평가등급 적용을 완화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특례 관련 조항 전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관리 특례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권한을 인천광역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이양하고(제9항),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특례(제10항)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특례의 적용 범위를 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무주체 간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리권한의 이양이 아닌 인허가의제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51조, 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의 특례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제2항) ○ <u>광역도시계획</u>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u>특구 등의 개발계획</u>은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 공간구조, 기능 분담뿐만 아니라 주변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를 통해 <u>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u> 확정될 필요 ○ <u>도시·군기본계획</u>은 시 또는 군 등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시·군의 관할 구역 전체에 걸쳐 계획 인구 예측 및 배분,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시재생·정비, 환경보전, 경관 등 각 부문별 계획이 통합·조정된 <u>도시·군기본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u> 도시 제반기능의 부조화, 지역 간 불균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 (제3항) 현행 「국토계획법」 제37조제3항에서 이미 시·도지사가 필요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 실익이 없음.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 (제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의 권한에 관해서는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이 법의 입법 목적과 운영상황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국토계획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으로 이양되어 있음. ○ <u>개발제한구역</u>은 도시의 성장관리 측면 외에 자연보전, 국가안보 등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리되는 전형적인 <u>국가사무</u>로, 특정 권역에 한정하여 <u>지자체에 지정·변경 권한 이양</u>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 (제5항) 법제처 법령해석례(08-0213)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특구 등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므로, 해당규정 삭제 필요

구분	부처 의견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 (제6항) <u>개발제한구역 해제</u>는 보전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 중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곳 및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 등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u>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며</u>,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u>국책사업도 예외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되며</u>, ○ 특구 지구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유사입법 채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 삭제 필요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 (제7항) 현행법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u>해제 시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고, 훼손지가 없는 경우에만 보전 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u> ○ 훼손지가 있음에도 부담금 대납을 허용할 경우 훼손지 복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유사입법 채도에 따라 제도 붕괴가 우려되므로, 해당 규정 삭제 필요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 (제8항) <u>개발제한구역 해제는 “先환경평가-後해제”라는 원칙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u>, 상기 원칙은 서민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 ○ <u>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환경평가등급 적용을 완화할 합리적 이유는 없고, 완화 시 형평성 등 논란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달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u>, 해당규정 삭제 필요
	해양 수산부	수정 의견	○ (제9항) 적용 범위를 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로 명확히 할 필요성, 관련 사무주체 간 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u>관리권 전환이 아닌 인·허가 의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u> ○ (제10항) 인·허가 의제 방식으로 규정 시, 제10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산업통상 자원부	수정 의견	○ (제11항) <u>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므로</u>, 특구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안 제52조, 제53조 및 제56조)

제 정 안
제52조(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인천광역시는 특구 등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3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관리청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 등”이라 한다)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이하 “입주기업 등”이라 한다)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된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 증여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제 정 안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등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 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제56조(지역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이 특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안전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이 특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 제52조) 제정안은 특구 등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범위에서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 등) 용량, 경관·환경, 안전 등과 직결되는 주요한 도시관리수단으로,

기초조사(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등), 주민·지방의 회 의견 청취,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률상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해지는 사항으로, 과도한 완화 적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법」 등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 유사 입법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안 제53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의 범위·방법, 사용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그 면제, 허가기간, 허가의 취소와 철회 등을 규정하여 사용에 대한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안 제53조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특례조항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첫째, 제정안은 특례의 대상을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각종 기업·기관·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특구 등의 육성과 무관한 기업 및 기관까지 특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유사 입법례⁴⁷⁾에 따라 투자요건, 업종 범위 등 입주자격요건을 법률

4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 2. 입주국내복귀기업 /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에 직접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사용허가 기간의 특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갱신 제한 사유가 없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⁴⁸⁾

제정안은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50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사용기간 50년은 반영구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시설의 경우, 「항만공사법」에 따라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

48)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고 있어 제정안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셋째,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⁴⁹⁾ 제정안은 사용료 산출 방법을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사용료 산출 방법을 변경하여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입주기업 등에게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은 특혜 시비 및 다른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52조, 건폐율과 용적률 에 관한 특례	국토 교통부	일부 수용	○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 조정)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u>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20으로 조정 필요</u>
제5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의 특례	행정 안전부	신중 검토	○ (제2항, 임대기간) 공유재산 사용기간 50년(갱신마다 50년 추가)은 반영구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49)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구분	부처 의견		
	해양수산부	수정 의견	○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시설의 경우 「항만공사법」 제29조에 따라, 당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임대기간 갱신 내용과 상충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를 두고자 함
	행정안전부	신중 검토	○ (제3항, 영구시설물 축조) 다른 공유재산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특혜 시비, 지방재정수입 감소 우려 등으로 수의계약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행정안전부	신중 검토	○ (제4항, 임대료) 「공유재산법」 제22조 및 제32조에서 사용료·대부료 산정 방법 및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입주기업 등에게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은 특혜 시비 및 다른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제56조, 지역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	중소벤처기업부	신중 검토	○ (제1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시, 위원회 안건으로 지체없이 상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상정에 대한 지지자체간 경쟁이 없어 규정 실익이 없음. ○ (제2항) 「지역특구법」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제1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라고 신청자격을 비수도권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는 규제자유특구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

제 정 안
제54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구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등에 대해서는 시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필요한 경우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5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 인천광역시장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정안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명승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사항⁵⁰⁾을 인천광역시장이 시(市) 문

5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상 변경 등에 대해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52조제1항 및 제53조).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명승의 현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허가사항임을 감안할 때, 허가권한 위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허가사항 중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개발사업에 한해 허가권한을 위임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54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유산청	신중 검토	(제1항)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항은 일부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허가대상임을 감안할 때, 허가권한 위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탁본 등에 관한 허가사항”은 제정법 취지와 불부합한 허가사항으로, 제외 필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항은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감안, <u>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개발사업에 한해</u> 허가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수용함.
	국가 유산청	신중 검토	○ (제2항) 市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은 <u>국가유산 규제정책의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u>를 위해 <u>현행법으로 관리</u>함이 타당함.
제55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유산청	신중 검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하는 등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항은 일부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허가대상임을 감안할 때, 허가권한 위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탁본 등에 관한 허가사항”은 제정법 취지와 불부합한 허가사항으로, 제외 필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항은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감안, <u>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개발사업에 한해</u> 허가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수용함.

(4)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안 제57조)

제 정 안
제5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57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인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¹⁾

5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⁵²⁾에 따라 9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등에 쟁점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처간 이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9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우선선정 및 면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5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을 경과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한다.

③ 시급한 조사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철도부문 9개월)로 단축한다.(이하 "신속예타절차"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사착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타법률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
2.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3. 위원회에서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으로 의결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우선 선정’ 규정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57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 재정부	신중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우선선정) 재정당국의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수행 기능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 필요 - 대상사업 선정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시급성 등 사업 추진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임. * 대상사업 선정기준(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33조) : ①상위계획 부합성, ②사업계획 구체성, ③사업추진 시급성, ④국고지원 요건, ⑤지역균형발전 요인, ⑥기술개발 필요성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 초래 및 유사사례 등으로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시 신중검토 필요

(5) 조세감면 및 부담금 감면 특례(안 제58조 및 제59조)

제 정 안
제58조(법인세 등 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연관산업기관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특구 등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입주기업 등과 입주기업 등에 소속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9조(부담금 등의 면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안 제59조 및 제60조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별법상 조세 감면 근거가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 근거가 직접 규정⁵³⁾

53)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

되어야 하므로 개별법상 재량규정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조세 감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개발부담금 제도 등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에 혜택만 부여하고 있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공익적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개별법을 통한 면제·감면 특례 등으로 인해 각종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⁵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종 부담금 면제·감면에 대해서는 신중

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4)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부과 제외 및 감면 대상 법률 및 관련 사업을 나열하고 있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일한 사유로 「전북특별법」, 「강원도법」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관련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58조, 법인세 등 조세 의 감면	기획 재정부	신중 검토	○ 개별법 차원의 세제지원 근거규정은 <u>비과세·감면을 통합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에</u> 배치되며, 개별법에 세제지원에 대한 재량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세제지원이 불가하여 <u>신중검토</u> 필요

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 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요청대로 경감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부처 의견		
제59조, 부담금 등의 면제	국토 교통부	신중 검토	○ <u>개발부담금</u>은 <u>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개발이익</u>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제도라는 점과 준조세적인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u>개발부담금 감면은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u>
	농림 축산 식품부	신중 검토	○ <u>농지보전부담금</u>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령(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법령에서 부담금 감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기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과의 중복 문제, 농지법의 입법취지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보전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관련 감면조항 신설은 신중한 검토 필요
		신중 검토	○ <u>대체초지조성비</u> 감면 여부는 소관 법률인 「초지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 ○ 또한, 개별법령에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감면되지 않으므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감면조항 신설은 신중할 필요
	산림청	신중 검토	○ <u>대체산림자원조성비</u> 감면 여부는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시설과 감면비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지관리법」에서도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의 타당성 등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규정
	환경부	신중 검토	○ <u>하천 점용료·사용료</u>는 「하천법」에 따라 공익목적인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 ○ 따라서,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하천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은 실질적 실익은 없고, 공익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 유발 우려

6.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등을 위한 재정확보(제6장, 안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 정 안
제60조(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조성사업 2.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3.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 등 조직의 설립·지정·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이 법에 따른 인력양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5.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등의 비용 지원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61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3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정안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구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60조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구성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글로벌경제거점도시 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인천시 특별회계에 대한 국가출연 등은 국채를 발행해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지방 재정체계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지방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보칙 및 벌칙(제7장, 안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 정 안
제64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해제 2. 제21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 해제 3. 제23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3. 제31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65조(보고·검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의 시행자,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및 관계인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행사업이나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7조(벌칙) 제6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정 안

제69조(과태료)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7장(보칙 등)은 특구 등의 지정 해제 시 청문절차(안 제64조), 사업 승인권자의 자료 제출 요구와 출입, 검사(안 제6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66조) 등 보칙 규정과 검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안 제67조) 및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제69조)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제정안에는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일련의 규정이 없는데(사업시행자의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인허가의제, 토지수용 등), 해당 규정이 신설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필요한 보칙 및 벌칙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⁵⁵⁾

55) 참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조항에는 통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조항 신설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8. 부 칙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336